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요양원 생활이나 서비스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6.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입소생활 중에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즉시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보호자가 입소자 면회 시 장시간 머무는 관계로 인해 다른 입소자들의 수면방해, 휴식방해 등등... 불편감등을 지나치게 유발시키거나 시설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고성,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다른 입소자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타 어르신들 케어 업무에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보호자 면회 예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입소자로 인해 요양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급여비용 미납으로 시설에 대한 채무가 발생할 때 이를 입소자와 연대하여 채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퇴소 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9. 입소자 사망 시 신원인수인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해야 한다. 사망 후 3일 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설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하며 그 비용은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제17조【시설의 계약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

4.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다른 입소자에게 폭력적인 언행으로 공동생활이 곤란하다고 느껴질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8조【임종 및 장례절차, 유류금품 처리】

① 임종말기라고 판단될 경우 병원으로 후송조치

1. 가족이 있는 경우 연락을 통하여 가족이 임종을 모시도록 조치한다.
2.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 임·직원이 임종을 모실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입소자가 부득이하게 원에서 임종하였을 경우, 보호자의 결정에 따라 원 가정이나 장례식장으로 운구하여 준 후 시신 인도를 한다

② 장례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사망 후의 가족과 장례절차를 합의하여 가족장 또는 시설장 여부를 결정한다.
2. 가족장의 경우 사망진단서, 유류품 등을 제공하고 시신 인도서를 징구한다.
3. 시설장은 2일장(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4. 시설장의 경우 영안실을 설치하고 비근무 직원 등이 야간 빈소를 관리한다.
5. 시신은 병원 영안실과 계약에 의하여 처리한다.
6. 시설장은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납골당에 안치한다.
7. 무연고의 경우 동(면)사무소에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한다.

③ 유류금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당해 어르신의 입소비 정산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외 의료경비부담
2. 사망진단서, 장례비 부족분 충당
3. 기타 당해 어르신과 직접 연관성 있는 경비충당
4. 노인복지법 제 48조에 의한 유류금품의 처분은 장례비용으로 충당하고 사용 잔액은 직계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인계하고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사망자 명의로 후원·입금 조치한다.